

# 의정활동보고서

제180회 정례회(2003. 7. 1 ~ 7. 10)

경 상 북 도 의 회

#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80회 정례회가 열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중에도 도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주어진 임무를 열성으로 수행하신 예결특위와 지방분권특위,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7대 도의회가 개원한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 도의회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조례안을  
비롯한 103건의 의안처리와 37건의 각종 민원을 원만히 처리하였으며,  
집행부를 견제하는 주요권한 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67건을 지적하고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이제 개원 1주년에 즈음하여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더한층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토록 합시다.

최근 언론이 국내상황을 “총체적 난국”으로 보고 있드시 정치적으로 대북 송금사건과 관련한 여·야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경기가 냉각된 상태에서 수출마저 줄어들면서 경기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잇달아 발생되고 있는 화물연대 및 철도 노조의 파업사태는 국민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와같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민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응기를 북돋아 주고 경기부양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도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의 면밀한 분석과 하반기 사업의 조기발주로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마철을 맞이하여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는 재난발생에 철저한 사전 대비로 인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2회계년도 결산과 200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심의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서,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의시 반영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추경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억제하고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를 맞이하여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엔 늘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 7. 1

경상북도회의의장      崔 圓 炳

# 차 례

I. 개 황 .....	
II. 의사 일정 .....	
1. 소 집 .....	
2. 회 기 .....	
3. 활 동 .....	
가. 본회의 .....	
나. 위원회 .....	
III. 의안 처리 .....	
1. 본회의 .....	
2. 위원회 .....	
IV. 민원처리 .....	
1. 청 원 .....	
2. 진 정 .....	
가. 접 수 .....	
나. 처 리 .....	

V. 본회의 보고사항 .....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

2. 조례공포사항 .....

3. 위원회 활동사항 .....

4. 기타사항 .....

VI. 5분 자유발언 .....

부 록

조 례 안 .....

동 의 안 .....

결 의 안 .....

예산 · 결산안 .....

청 원 서 .....

# I. 개 황

- 경상북도의회 제180회 정례회는 2003년 7월 1일 개최하여 7월 10일까지 10일간의 회기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20차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정례회의는 7월 1일(화)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0회경상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002년도경상북도및경상북도교육청결산검사보고와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의건 등을 의결한 후 휴회하였다.
- 회기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2회계연도경상북도와경상북도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 2003년도경상북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실시하였다.
- 7월 10일(목)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채희영, 이용석, 이현준 의원)을 청취한 후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보고, 2002회계연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2회계연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003년도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경상북도교육청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문명중학교설립인가승인에관한청원 등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제180회 정례회를 폐회 하였다.

## Ⅱ. 의사 일정

### 1. 소 집

가. 집회 구분 : 임시회

나. 소집 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다. 소집 요구 : 방유봉 의원의 19인

라. 집회공고일 : 2003. 6. 17

마. 집 회 일 : 2003. 7. 1(화) 11:00

### 2. 회 기

가. 회의 기간 : 2003. 7. 1 ~ 7. 10(10일간)

나. 개의 횟수

○ 본회의 : 2 회(누계 29회)

○ 위원회

구분	계	의회 운영	기 획	행정 사회	교육 환경	농수산	산업 관광	건설 소방	특별
금회	20	2	2	2	3	2	2	2	5
누계	141	15	15	19	22	16	17	16	21

※ 누계는 제7대 의회 누계

### 3. 활 동

####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3. 7. 1(화) 11:00	1. 제180회경상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2회계연도경상북도및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결과보고 3.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8. 휴회의건	제 1 차 원안가결 원안가결 " " "
7. 10(목) 11:00	1. 지방자치발전분권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 2. 2002회계연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2회계연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2003년도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7. 경상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8.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문명중학교설립인가승인에관한청원	제 2 차 원안가결 " " 수정가결 원안가결 " " " "

## 나. 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3. 7.1(화) 10:0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 1 차 원안가결
7. 3(목) 16:00	○ 제181회회기협의의견 ○ 2002회계연도결산및2003년도제1회추경 예산안 심사	제 2 차 원안가결 " "

### <기획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3. 7. 3(목) 11:00	○ 2002회계연도결산 및2003년도제1회추경 예산안 심사 -기획관리실소관 ○ 2003년도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제 1 차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7. 4(금) 11:00	○ 2002회계연도결산 및2003년도제1회추경 예산안 심사 -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소관	제 2 차 원안가결 "

### <행정사회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3. 7. 2(수) 11:00	○ 2002회계연도결산 및2003년도제1회추경 예산안 심사 - 자치행정국(자연환경수원)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수정가결
7. 3(목) 11:00	○ 2002회계연도결산 및2003년도제1회추경 예산안 심사 - 경도대학, 사회복지여성국소관	제 2 차 원안가결 "

<교육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3. 7. 2(수)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회계연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li> <li>○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li> <li>○ 문명중학교설립인가승인에관한청원</li> </ul>	제 1 차 원안가결 " " 의견서채택
7. 3(목)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회계연도결산심사 - 보건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보건환경연구원소관</li> </ul>	제 2 차 원안가결
7. 4(금)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 - 보건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보건환경연구원소관</li> </ul>	제 3 차 수정가결

<농수산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3. 7. 3(목)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회계연도결산 및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 - 농수산국소관</li> </ul>	제 1 차 원안가결 수정가결
7. 4(금)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회계연도결산 및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 - 농업기술원소관</li> </ul>	제 2 차 원안가결 "

<산업관광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3. 7. 2(수) 11:00	○ 2002회계연도결산 및2003년도제1회추경 예산안 심사 - 문화체육관광국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
7. 3(목) 11:00	○ 2002회계연도결산 및2003년도제1회추경 예산안 심사 - 경제통상실소관	제 2 차 원안가결 수정가결

<건설소방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3. 7. 3(목) 11:00	○ 2002회계연도결산 및2003년도제1회추경 예산안 심사 - 건설도시국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수정가결
7. 4(금) 11:00	○ 2002회계연도결산 및2003년도제1회추경 예산안 심사 - 소방본부소관	제 2 차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3. 7. 1(화) 13:0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	제 1 차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3. 7. 7(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회계연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li> <li>○ 2002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행정국, 경도대학, 문화체육관광국, 농수산국, 농업기술원</li> <li>-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 교육원, 경제통상실, 보건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li> <li>- 사회복지여성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의회사무처</li> </ul> </li> </ul>	제 2 차  원안가결  원안가결
7. 8(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경제통상실, 자치행정국, 경도대학 농수산국, 농업기술원</li> </ul> </li> </ul>	제 3 차
7. 9(수)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사회복지여성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의회사무처</li> </ul> </li> </ul>	제 4 차
7. 10(목) 2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수조정 및 예산안 의결</li> </ul>	제 5 차 수정가결

### Ⅲ. 의안 처리

#### 1. 본회의

구 분	부의	심 의 · 의 결				철회	계류	비고
		계	가 결		부결			
			원안	수정				
계	8 (111)	8 (111)	7 (101)	1 (10)				
조 례 안	소계	2 (45)	2 (45)	2 (44)	(1)			
	의 회 제 안	(1)	(1)	(1)				
	도지사 제 출	(34)	(34)	(33)	(1)			
	교육감 제 출	2 (10)	2 (10)	2 (10)				
예산·결산	3 (12)	3 (12)	2 (6)	1 (6)				
동의·승인	1 (27)	1 (27)	1 (26)	(1)				
건의안	(7)	(7)	(6)	(1)				
결의안	1 (7)	1 (7)	1 (7)					
기타안	1 (13)	1 (13)	1 (12)	(1)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 2. 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부결	철회	계류
		가 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8 (112)	8 (111)	2 (45)	3 (12)	1 (27)	(7)	1 (7)	1 (13)			(1)
의회운영	1 (2)	1 (2)	(1)				1 (1)				
기 획	1 (12)	1 (12)	(6)		1 (4)	(1)		(1)			
행정사회	(28)	(27)	(18)		(8)	(1)					(1)
교육환경	3 (15)	3 (15)	2 (11)		(3)			1 (1)			
농 수 산	(7)	(7)	(2)		(4)	(1)					
산업관광	(12)	(12)	(5)		(6)		(1)				
건설소방	(7)	(7)	(2)		(2)	(2)		(1)			
특 별	3 (12)	3 (12)		3 (12)							
본회의	(17)	(17)				(2)	(5)	(10)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IV. 민원처리

###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1	-	1	1	
누 계	1		1	1	

※ 누계는 제7대의회 실적

### 2. 진 정

#### 가. 접 수

위원회별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5 (42)	1 (3)	1 (5)	(4)	(7)	(4)	(3)	(3)	(4)	3 (9)
의회운영										
기 획	(2)									(2)
행정사회	2 (4)	1 (2)	1 (1)	(1)						
교육환경	(6)					(4)		(2)		
농 수 산	(5)			(1)	(1)				(3)	
산업관광	1 (10)		(4)				(3)			1 (3)
건설소방	(13)	(1)		(2)	(6)			(1)	(1)	(2)
특별위원회	2 (2)									2 (2)

※ ( )안은 제7대 의원 누계

나. 처 리

위원회별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2 (38)	2 (38)				3 (4)
의회운영						
기 획	(2)	(2)				
행정사회	2 (4)	2 (4)				
교육환경	(6)	(6)				
농 수 산	(5)	(5)				
산업관광	(9)	(9)				1 (1)
건설소방	(12)	(12)				(1)
특별위원회						2 (2)

※ ( )안은 제7대 의회 누계

## V. 본회의 보고사항

###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제 출 자 (제출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경상북도교육감 (2003. 6. 19)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03. 6. 24)
경상북도교육감 (2003. 6. 19)	경상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03. 6. 24)
경상북도교육감 (2003. 6. 19)	2002회계연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교육환경 (2003. 6. 20)
경상북도지사 (2003. 6. 20)	2002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각 상임위 (2003. 6. 20)
경상북도지사 (2003. 6. 20)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 상임위 (2003. 6. 20)
경상북도지사 (2003. 6. 23)	2003년도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기 획 위 (2003. 6. 24)

## 2. 조례 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3. 6. 5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	2003. 6. 19
2003. 6. 5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외국인투자촉진지원조례개정조례	2003. 6. 19
2003. 6. 5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2003. 6. 19
2003. 6. 5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	2003. 6. 19
2003. 6. 5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	2003. 6. 19

## 3. 위원회 활동사항

위 원 회	일시(기간)	장 소	활 동 내 용
지방자치발전 분권특별위원회	2003. 6.27 ~ 6.29	인천광역시 의회, 경기도 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권특위 운영실태 견학</li> <li>○ 수범사례등 자료수집</li> </ul>

## 4. 기타사항

- 제48회 현충일 기념식
  - 일 시 : 2003. 6. 6(금) 09:50
  - 장 소 : 경산시 충혼탑
  - 참 석 : 최원병 의장
  
- 당면 현안사항 토의 간담회
  - 일 시 : 2003. 6. 9(월) 10:3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17명(의장단 3, 상임위원장 7, 간사 7)
  
- 경북일보 북부 취재본부 개소식
  - 일 시 : 2003. 6.11(수) 11:00
  - 장 소 : 취재본부 사무실
  - 참 석 : 김선중 부의장
  
- 북유럽 해외연수
  - 기 간 : 2003. 6.11~6.22(11박 12일)
  - 연 수 국 : 5개국(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 연 수 자 : 이철우 단장의 11명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 일 시 : 2003. 6.16(월) 11:00
  - 장 소 : 강원도 고성 하일라비치콘도
  - 참 석 : 손규삼 운영위원장의 전문위원등
  
- 제49회 전국 남·여 종별 탁구선수권 대회
  - 일 시 : 2003. 6.16(월) 14:00
  - 장 소 : 안동 실내체육관
  - 참 석 : 김선중 부의장

○ 지역발전 토론회

- 일 시 : 2003. 6.17(화) 15:00
- 장 소 : 도청 강당
- 참 석 : 양재경 의원

○ 제30회 경상북도 미술대전

- 일 시 : 2003. 6. 20(금) 15:00
- 장 소 : 문경 시민회관
- 참 석 : 김선중 부의장

○ 생활개선회 임원교육

- 일 시 : 2003. 6.23~6.24
- 장 소 : 김천 도 청소년수련관
- 참 석 : 방대선 농수산위원장(축사) 및 위원

○ 대구·경북 지역발전협의회

- 일 시 : 2003. 6. 25(수) 07:30
- 장 소 : 대구 그랜드 호텔
- 참 석 : 최원병 의장

○ 제53주년 6.25 기념행사

- 일 시 : 2003. 6.25(수) 11:00
- 장 소 : 김천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최원병 의장(축사), 김응규·김정기의원

○ 대구·경북 분권혁신 민·관협의회 창립대회

- 일 시 : 2003. 6.25(수) 14:30
- 장 소 : 대구 전시컨벤션센터
- 참 석 : 최원병 의장(축사), 자문위원에 최원병 의장, 공동 의장에 김선중 부의장, 운영위원에 우성호·김성하 의원이 선임됨.

## VI. 5분 자유발언

### □ 제2차 본회의

#### 채희영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 그리고 이의근 지사와 도승희 교육감, 배석한 공무원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경출신 채희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의 발언 이유는 책임 있는 공무원이 상식적이면서도 일상의 통념  
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자행하여 이를 개선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 순간 본의원의 마음도 무겁고 서글프기 한량없음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의 국외여행에 관한 문제  
입니다. 본 건은 문서번호 방호 13820-10529호로 2003년6월19일 허가받아  
동일 시행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는 경상북도의회 제179회 임시회  
가 6월5일 폐회되어 7월1일 11시에 제180회 정례회 회기에 관한 안내가  
최원병 의장으로부터 통고된 이후의 시기였습니다. 소방본부장도 함께 자  
리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정례회에서는 2003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의결된다는 현안도 숙지하고 있었다고 판단  
합니다.

그렇다면 고의적이면서도 의식적으로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경상북도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한 소방본부장의 독존적이고 고압적인 아집  
에 사로잡혀 연출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책임과 도의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지  
사의 전결인 최종결재를 득하여 7월2일 출국하였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한  
사실은 7월4일 11시에 경상북도 소방본부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태라고 유추한다면, 추가  
경정예산안에는 포함 남부소방서 신축 문제를 비롯한 7개 시군의 소방과

출소 및 대기소 등 신·중축의 예산이 편성되어 해당지역 동료의원들에게는 물론 소방본부 자체에도 중요하고도 긴박감마저 느끼게 하는 시기였습니다.

더욱 실소를 금치 못할 문제는 소방본부장은 2002년7월10일부터 14일까지 3박4일간 시군 의용소방대장 23명을 직접 인솔하여 일본을 비교시찰하고 귀임한 예도 있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적이며, 옛날 임금의 집권하던 시대 고을의 사또 마냥 내가 아니면 아니 된다는 고집불통의 구시대적 사고와 고정관념의 포로가 된 소방본부장이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여성의용소방대장들을 호주 해외비교시찰에 또 다시 직접 인솔한 행위 자체는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행동으로 불쾌하기 한이 없는 것으로써 강력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소방본부장의 행동에 관하여 행정절차상의 문제나 기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님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절차적 행위가 법적 흠결 이전에 관습과 도덕률과 최소한의 인간양심을 말하는 것이며, 공직자로서의 책무와 염치와 신의·성실의 일반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이번 해외시찰단 인솔은 중간간부에게 양보하고 중요한 추가 경정예산의 제안설명과 함께 심의·의결의 요청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던 책무이고, 출국시기도 정례회가 예고·통고된 상황에서 연기 또는 조정할 수 있었다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태풍 루사의 처참한 피해로 국가재해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한 악몽을 상기했다면 감히 출국하지 못하였을 것은 삼척동자도 느끼고 있었을 텐데 본부장만이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는지 강력히 묻는 바이며, 참모들은 왜 적극 만류하지 못하였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최종 결재라인에 있었던 행정부지사께서도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예견하지 못하고 사인을 했는지 묻습니다.

흔히들 말할 때 경상북도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전국 규모의 최우수상 등 절대모범의 수범이었고, 공직자 역시 최고·최선을 다하여 3백만 도민

의 참된 공복으로서 신명을 다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역시 이에 못지 않게 양대 수레바퀴의 한 축을 자부하면서 함께 굴러가고 있었을 책무를 다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연구하며 봉사하는 청정의 경상북도 공무원상에 소방본부장은 오염된 탁류를 유입시키고 말았습니다. 탁류를 유입시키지 말고 더불어 함께 하는 청정수로 개혁·변화하든지 아니면 다른 흐름의 물길을 따라 흘러가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물론 지사께서도 본의원과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 이용석 의원(농수산위원회)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은, 우리 경상북도는 농도입니다. 그리고 도시화보다는 농업화입니다. 본의원의 오늘 5분발언 주요의제는 2000년도에 거점광역파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맞지 않아서 또 적합하지 않아서 폐지를 하고 다시 읍면지역 소단위 파출소 구역으로 바꿨습니다. 또 다시 6월달에 경상북도경찰청에서 광역거점파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거점파출소 운영으로 인해서 순찰차만 부지런히 다니지 민과 경찰의 유대와 정보공유, 범죄예방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은 거점파출소를 운용함으로써 끝에서 끝에, 30km 내지 40km를 구역으로 해서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이면 관할 파출소에는 파출소 문마저 닫고 맙니다.

그래서 범죄예방 차원은 말할 것도 없고, 민이 범죄예방의 정보를 경찰에 알려줄 수도 없고 공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범죄예방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또 범죄자만 늘어나게 합니다. 민과 경찰이 전혀 모르니까 사소한 일만 생기면 경찰이 출동을 해서 사건화를 해서 범죄자를 만

들고 전과자를 만듭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또 넓기 때문에, 도시에는 맞을지 몰라도 농업지역인 우리 도에는 광역거점파출소가 적합지 않다고 본의원은 여러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상북도에 광역거점파출소가 생기므로 해서 하루에 범죄자가 면지역 소단위 파출소 운영 때보다 배의 범죄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역에 우범자나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옛날에는 그래도 이장님이나 지도자들이 파출소 직원들하고 유대관계가 있어서, 사전에 우리 동리에 우리 지역에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 좀 눈여겨봐 주십시오 해서 범죄예방이 되고, 청소년 범죄는 나날이 밤만 되면 더 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본의원이 제기하게 된 이유는 국민을 민주경찰이 오히려 광역거점파출소로 함으로써 범죄자 양산공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 의원 여러분, 우리 다같이 농촌지역에 고향에 가서서 지금 얼마만큼 파출소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다같이 눈여겨보시고, 이의근 지사님께서서는 경찰청이 경상북도지사님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더라도 지사님은 경찰청장님과 상의하셔서 읍면지역, 소단위 과거의 관할파출소 제도로 운영해 주셔야만 농촌의 범죄예방, 정보공유, 또 경찰과 민이 하나될 수 있는 화합이 되고 민주경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지사께서는 청장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건의하고 토론하셔서 면지역으로는 환원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의원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현준 의원(행정사회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나종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금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예천공항운항 결손금 지원에 대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북부지역의 어려움을 간곡하게 호소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천공항은 1989년 첫 취항 이후 서울, 제주 2개 노선 1일 6회 왕복 12편을 운항해 하루 평균 1,080명의 탑승객들이 이용함으로써 북부지역의 교통편의 증진과 문화관광 분야 진흥 및 원활한 물류수송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IMF외환위기와 중앙고속도로의 건설 등으로 인해 탑승객이 현저히 감소하여 현재는 아시아나 항공만이 제주 1개 노선만 운항을 하다가 또 중단하였다가 어제 겨우 재취항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386억원을 들여 신청사가 건립되었습니다만 이용객 감소로 공항이 폐쇄될 위기에 있으며, 그동안 경북도와 예천, 문경, 안동, 영주 등 인근 자치단체가 정상적인 항공기 운항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12월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연간 탑승률 50% 미만에 대한 결손액을 경상북도와 예천, 문경, 영주, 안동 등 4개 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원조례가 제정될 때 지역주민들은 우리 지역에서도 계속하여 저 푸른 창공을 나는 여객항공기를 볼 수 있구나 하면서 크게 환영했습니다. 산간 내륙지역에 공항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민들이 갖는 그 자부심에 대한 가치는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있는 공항마저 지키지 못하고 폐쇄된다면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어 이런 푸대접, 무시를 당하는구나 하는 지역민들의 자괴감, 손상된 자긍심을 누가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까?

항공산업은 첨단 미래산업으로 국력과 국가의 위상을 상징하고 있어 모든 나라들이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항공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책이나 사업이 이루

어지는 현장은 지방입니다. 어떤 시책이나 사업이 결실을 맺으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기업이 뜻과 힘을 모아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항공산업과 관련되는 예산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되지만 현재로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어렵고 다른 대안적 방법이 없습니다. 공항을 완전히 폐쇄하기보다는 오히려 공항을 살려 놓고 진행을 해 가면서 보다 나은 대안적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공사의 운항적자에 대한 지원사례는 인근 일본의 경우 각 취선별로 50~100%까지 보조해 주고 있으며, 원주공항의 경우 원주~제주간 운항되는 운항결손금의 7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들의 염려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지원하면 계속 지원하게 되어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시겠지만 일단 한번만이라도 지원을 해 주신다면 차후 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중앙정부의 지원, 대체 경비행기의 도입을 위한 방안 등 도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키는 대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어쨌든 예천공항의 수혜자는 북부지역의 도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수혜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경북도가 일정부분은 책임을 지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항공사가 입은 손실액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총 결손금액 중 도가 부담하는 것은 25%입니다. 나머지는 해당 지역 4개 시·군과 항공사입니다. 지방 항공노선 하나로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정서는 매우 혼란해졌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역할과 기능은 이런 어려운 때 적극적으로 조정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군에서는 약속을 지키는데 우리 도가 발을 빼버리면 광역자치단체라는 도의 위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안심사가 한 차례 유보되는 진통을 겪으면서 결국 지난 2002년12월 지원조례가 우리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조례를 가결한 것은 조례에 담긴 내용, 즉 필요한 경우 항공사의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의지가 있음을

대내외에 알린 것입니다. 집행부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의회가 조례로써 이를 뒷받침을 했는데 이제 6개월이 갓 지나 조례문의 인쇄가 마르기도 전에 스스로 번복해 버린다면 행정의 신뢰성과 공신력 추락은 누가 책임지며 우리 의회의 위상은 누가 어떻게 지켜나가겠습니까?

다소 미흡하더라도 몇 개의 시·군 지역과 중앙정부, 민간기업이 모여 협의를 하고, 언론 등에 널리 알려져 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열린 자세로 지원해 주어야 하며, 집행부가 소신을 갖고 대외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면서 활발한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선이 예천~제주이기 때문에 수혜대상이 제주에 관광 가는 사람들인데 도민의 혈세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도 일부 수공은 합시다만, 평생 비행기 타고 외국은 못 가더라도 제주도라도 한번 가고 싶어하는 노인네들과 북부지역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신혼부부나 자라나고 있는 우리들의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비행기 값 얼마 보태 주는 것도 아깝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도와 드려야 하는 계층들입니다.

우리 도가 당면한 과제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경제 살리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살리기의 핵심은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유력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예천공항뿐입니다. 국가에서 400여억원을 들여 북부지역 개발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위해 만들어 주었는데 비행기가 한 대도 뜨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국가적 손실이고 지역적 손실입니까? 아니, 거창한 구호를 말하기 전에 오늘도 속고 무시당한 분노로 가슴을 치고 있는 우리 경북 북부지역 도민들의 하나같은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넓은 안목과 열린 자세로 국가와 지역의 균형발전, 도민화합을 생각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폐쇄일보 직전에 있는 예천공항을 살려 주십시오.

# 부 록

- 조 례 안 : 2건
- 동 의 안 : 1건
- 결 의 안 : 1건
- 예결특위종합심사 : 3건
  - 예 산 안 1건
  - 결 산 안 2건
- 청 원 서 : 1건

□ 조 례 안 : 2건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7. 10

경상북도조례 제 호

## 경상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3호중 “교육·행정통계 업무”를 “교육·행정통계, 교수·학습지원 센터업무”로 한다.

제11조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동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교수·학습지원센터 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제17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교수·학습지원센터 서비스시스템 운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 (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2. (생략)</p> <p>13. 교육정보화, 행정전산화, <u>교육·행정 통계 업무</u></p> <p>14. ~ 15. (생략)</p>	<p>제7조 (교육국) ----- -----.</p> <p>1. ~ 12. (현행과 같음)</p> <p>13. -----<u>교육·행정 통계, 교수·학습지원센터 업무</u></p> <p>14. ~ 15. (현행과 같음)</p>
<p>제11조 (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p> <p>1. ~ 14. (생략)</p> <p>15. (생략)</p>	<p>제11조 (업무) ----- -----.</p> <p>1. ~14. (현행과 같음)</p> <p>15. <u>교수·학습지원센터 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u></p> <p>16. (현행 제15호와 같음)</p>
<p>제17조 (업무) 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p> <p>1. ~ 5. (생략)</p> <p>6. (생략)</p>	<p>제17조 (업무)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교수·학습지원센터 서비스시스템 운영</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7. 10

경상북도조례 제 호

##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별표1]의 “봉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중 “봉화군 봉화읍 포저리 252-3”을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252-3”으로 하고, “내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중 “봉화군 봉화읍 포저리 452-1”을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452-1”로 한다.

[별표2]의 『명칭 및 위치』란중 “구평남부초등학교”란 다음에 “구미사곡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명 칭	위 치
구미사곡초등학교	구미시 사곡동 603-34

“사동초등학교”란 다음에 “성암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성암초등학교	경산시 옥산동 산40-15

“봉화초등학교”의 『위치』란중 “봉화군 봉화읍 포저리 252-3”을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252-3”으로 하고, “내성초등학교”의 『위치』란중 “봉화군 봉화읍 포저리 452-1”을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452-1”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 동 의 안 : 1건

- 2003년도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 2003년도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 6. 24.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3. 6. 24

다. 상정일자

- 제18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위원회(2003. 7. 3)
  - 상정, 질의, 답변, 토론,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실장 김 치 행

나. 제안이유

-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가 완료됨에 따라 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기금명칭 : 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
- 주요내용 :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1%에  
해당하는 2,609백만원을 2003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의 세입·세출에 편성하여 사용코자 함
  - 세입현황 : 2,609백만원  
(2002 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12,327백만원의 21%)
  - 세출현황 : 2,609백만원(지방채 조기상환)

### 4. 기금개요

- 기금명칭 : 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
- 설치근거 : 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설치목적
  - 도로건설·상하수도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재해복구 등을  
위하여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재원 마련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채 관리로 재정건전화 도모
- 설치년도 : 2001년도

○ 기금운용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2년도말	2003년도 운용계획			2003년도말	비 고
	현재액(A)	수 입	지 출	증 감(B)	현재액(A+B)	
경상북도지방채 상환기금	-	2,609,000	2,609,000	-	-	

○ 재원조성 : 출연금, 이자수입

- 매년 발생하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

○ 운용방법

- 지방채발행 차입 이율이 시중 예탁금리 보다 높을 경우 지방채 조기상환
- 지방채발행 차입 이율이 시중 예탁금리 보다 낮을 경우 일정액 적립후 지방채 적기 상환

## 5. 기금운용계획

○ 자금수지 총괄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항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합 계	2,609,000	7,023,993	△4,414,993	합 계	2,609,000	7,023,993	△4,414,993
· 전년도 이월금				· 차입금 상 환	2,609,000	7,023,993	△4,414,993
· 출연금	2,609,000	7,023,993	△4,414,993	- 원 금	2,500,000	6,600,000	△4,100,000
				- 이 자	109,000	423,993	△314,993

○ 수입계획

-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1% 이상에 해당하는 2,609백만원의 도비출연금

(단위:천원)

항 목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산 출 내 역
• 기타회계전입금	2,609,000	7,023,993	△4,414,993	○ 도비출연금 = 2,609,000

○ 지출계획

-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 : 2,609백만원
  - 원금 2,500백만원, 이자 109백만원

※ 2001 청소년수련원건립의 1개사업

(단위:천원)

항 목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산 출 내 역
지방채 상환	2,609,000	7,023,993	△4,414,993	
• 차입금이자	109,000	423,993	△314,993	○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 = 109,000 • '01청소년수련원건립의 1개사업
• 차입금원금	2,500,000	6,600,000	△4,100,000	○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 = 2,500,000 • '01청소년수련원건립의 1개사업

## 6. 검토의견 (기획전문위원 이희지)

- 2003년도 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5호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 도가 추진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조성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  
매년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있어 보다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금번에 제출된 2003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23억원의 21%에 해당하는 26억 9백만원을 채무상환기금으로 적립하여

예금이율 보다 상환이율이 높은 2001청소년수련원건립의 1개 사업에 대하여 조기 상환함으로써 도 지방채무 부담을 다소라도 줄이게 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지난해에도 70억원을 적립하여 상환이율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전액 조기 상환함으로써 지방채상환 부담을 경감한 바 있음

- 앞으로 지방채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채상환 부담경감을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과 지방채 발행 억제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결 의 안 : 1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03. 7. 1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

## 1. 주 문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출된 결산 및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제안이유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하반기에 심사해야 할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결산 및 예산안, 2004년도 상반기중 심사해야 할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3. 내 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전체 15명으로 구성하되, 각 상임위원회 추천 2명과 의장추천 3명으로 한다.
- 활동기간은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명단

구 분	추천자 명단	비 고
계	15 명	
의장추천	방유봉(울진), 김기대(성주), 권준택(칠곡)	
기 획	박경동(울릉), 장미향(상주)	
행정사회	나종택(고령), 황복희(비례)	
교육환경	김응규(김천), 김준호(영천)	
농 수 산	강영서(봉화), 정상진(예천)	
산업관광	김석호(구미), 정일영(울진)	
건설소방	윤경희(비례), 황상조(경산)	

□ 예결특위 종합심사

○ 예산안 : 1건

-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보고서

## I. 심사결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6월 20일, 경상북도지사
2. 회부일자 : 2003년 7월 5일
3. 상정일자 : 제180회 경상북도의회(정례회)  
제3,4,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7.8~7.10)
4. 의결일자 : 2003년 7월 10일(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II.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III. 추경예산 편성 방침

- 지방채 350억원 미차입에도 불구하고 따른 국가지원사업 도비부담
- 국가지원예산이 전년도 보다 55%증액(974→1,505억원)  
됨에 따른 증감액 정리
- DDA협상, FTA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제고
- 지방대학 기능강화 및 지역경기 활성화 등

## IV. 추가경정예산안

### 1. 세입·세출예산 규모

#### (가) 총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2,732,609	100	2,470,726	100	261,883	10.6%
일 반 회 계	2,248,560	82.3	1,996,300	80.8	252,260	12.6
특 별 회 계	484,049	17.7	474,426	19.2	9,623	2.0
의료급여기금운영	189,988	7.0	188,399	7.6	1,589	0.8
치 수 사 업	26,114	0.9	19,000	0.8	7,114	37.4
경도대학운영	6,614	0.2	5,732	0.2	882	15.4
광역교통시설	7,522	0.3	7,484	0.3	38	0.5
지역개발기금운영	253,811	9.3	253,811	10.3	0	0

#### (나)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2,732,609	100	2,470,726	100	261,883	10.6%
자 체 수 입	851,491	31.2	766,963	31.0	84,528	11.0
지방세 수입	520,000	19.0	490,000	19.8	30,000	6.1
세 외 수 입	331,491	12.1	276,963	11.2	54,528	19.7
경상적수입	65,411	2.4	61,745	2.5	3,666	5.9
임시적수입	266,080	9.7	215,218	8.7	50,862	23.6
의 존 수 입	1,881,118	68.8	1,703,763	69.0	177,355	10.4
지방교부세	413,748	15.1	395,320	16.0	18,428	4.7
지방양여금	270,311	9.9	182,770	7.4	87,541	47.9
보 조 금	1,072,059	39.2	1,000,673	40.5	71,386	7.1
지 방 채	125,000	4.6	125,000	5.1	0	0

## (다)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2,732,609	100	2,470,726	100	261,883	10.6%
경 상 예 산	214,892	7.9	205,447	8.3	9,445	4.6
인 건 비	108,473	4.0	104,344	4.2	4,129	4.0
경상적경비	106,419	3.9	101,103	4.1	5,316	5.3
사 업 예 산	1,999,791	73.2	1,794,827	72.6	204,964	11.4
보 조 사 업	1,655,040	60.6	1,491,086	60.3	163,954	11.0
자 체 사 업	344,751	12.6	303,741	12.3	41,010	13.5
채 무 상 환	118,138	4.3	118,138	4.8	0	-
예 비 비 등	399,788	14.6	352,314	14.3	47,474	13.5

※ 예비비 등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적립금, 전출금, 출연금 등임

## 2. 일반회계

###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2,248,560	100	1,996,300	100	252,260	12.6%
지 방 세 수 입	520,000	23.1	490,000	24.5	30,000	6.1
세 외 수 입	95,183	4.2	49,255	2.5	45,928	93.2
경상적경비	23,709	1.1	19,450	1.0	4,259	21.9
임시적수입	71,474	3.1	29,805	1.5	41,669	139.8
지 방 교 부 세	413,748	18.4	395,320	19.8	18,428	4.7
지 방 양 여 금	270,311	12.0	182,770	9.2	87,541	47.9
보 조 금	914,318	40.7	843,955	42.3	70,363	8.3
지 방 채	35,000	1.6	35,000	1.7	0	0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합계	2,248,560	100	1,996,300	100	252,260	12.6%
경상예산	210,120	9.3	200,642	10.1	9,478	4.7
인건비	107,025	4.7	102,863	5.2	4,162	4.0
경상적경비	103,095	4.6	97,779	4.9	5,316	5.4
사업예산	1,650,610	73.4	1,456,996	73.0	193,614	13.3
보조사업	1,459,419	64.9	1,297,054	65.0	162,365	12.5
자체사업	191,191	8.5	159,942	8.0	31,249	19.5
채무상환	38,074	1.7	38,074	1.9	0	0
예비비등	349,756	15.6	300,588	15.0	49,168	16.4

-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합계	2,248,560	100	1,996,300	100	252,260	12.6%
일반행정비	279,181	12.4	251,433	12.6	27,748	11.0
사회개발비	880,048	39.1	757,784	38.0	122,264	16.1
경제개발비	800,679	35.6	733,311	36.7	67,368	9.2
민방위비	100,518	4.5	95,401	4.8	5,117	5.4
지원및기타경비	188,134	8.4	158,371	7.9	29,763	18.8

### 3. 특별회계

####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484,049	100	474,426	100	9,623	2.0%
의료급여기금운영	189,988	39.2	188,399	39.7	1,589	0.8
치 수 사 업	26,114	5.4	19,000	4.0	7,114	37.4
경도대학운영	6,614	1.4	5,732	1.2	882	15.4
광역교통시설	7,522	1.6	7,484	1.6	38	0.5
지역개발기금운영	253,811	52.4	253,811	53.5	0	0

#### (나)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484,049	100	474,426	100	9,623	2.0%
세 외 수 입	236,308	48.8	227,708	48.0	8,600	3.8
경상적수입	41,701	8.6	42,295	8.9	△594	△1.4
임시적수입	194,607	40.2	185,413	39.1	9,194	5.0
보 조 금	157,741	32.6	156,718	33.0	1,023	0.7
지 방 채	90,000	18.6	90,000	19.0	0	0

## (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484,049	100	474,426	100	9,623	2.0%
경 상 예 산	4,772	1.0	4,805	1.0	△33	△0.7
인 건 비	1,448	0.3	1,481	0.3	△33	△2.2
경상적경비	3,324	0.7	3,324	0.7	0	0
사 업 예 산	349,180	72.1	337,831	71.2	11,349	3.4
보 조 사 업	195,621	40.4	194,032	40.9	1,589	0.8
자 체 사 업	153,559	31.7	143,799	30.3	9,760	6.8
채 무 상 환	80,064	16.6	80,064	16.9	0	0
예 비 비 등	50,033	10.3	51,726	10.9	△1,693	△3.3

### 4. 계속비 사업

- 계속비사업은 2건에 당초 총사업비 495억보다 5천 6백만원이 증액된 495억 5천 6백만원으로서
  - 2001년까지 161억 4천 1백만원
  - 2002년도에 116억 7백만원이 투입되었고
  - 2003년도에 101억 5천 8백만원
  - 2004년도에 116억 5천만원이 투자될 계획임
- 금회추경에 5천 6백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북부지역합동청사 부지(1,100여평) 추가매입비로 계상한 것임

- 계속비 사업조서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구분	총 사업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01	2002	2003	2004
계	변경	49,556	16,141	11,607	10,158	11,650
	당초	49,500	16,141	11,607	10,102	11,650
	증감	56	0	0	56	0
북부지역 합동청사건립 · 부 지 19,917m <sup>2</sup> · 연건평 5,641m <sup>2</sup>	변경	7,256	1,991	5,107	158	0
	당초	7,200	1,991	5,107	102	0
	증감	56	0	0	56	0
하양~와촌~대구 도로사업 · L 7.49km · B 18.5m	변경	42,300	14,150	6,500	10,000	11,650
	당초	42,300	14,150	6,500	10,000	11,650
	증감	0	0	0	0	0

※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는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설계비 등이 포함됨

## V.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

- 별도 배부 유인물 내용과 같음.

## VI. 검토의견

### 1. 총괄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당초예산 2조 4,707억 2천 6백만원보다 2,618억 8천 3백만원(10.6%)이 증액된 2조 7,326억 9백만원임.

#### ○ 이를 회계별로 보면

-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조 9,963억원보다 2,522억 6천만원 (12.6%)이 증액된 2조 2,485억 6천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744억 2천 6백만원보다 96억 2천 3백만원(2.0%)이 증액된 4,840억 4천 9백만원임.

#### ○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2,619억여원으로서

-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문에서 845억원 늘어났고
-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 714억원과 지방교부세 184억원, 지방양여금 876억원이 증액되었음.

○ 그리고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재원은 특정재원인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과 일반재원인 지방세, 전년도 중앙지원미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서

- 국고보조사업 704억원, 교부세사업 123억원, 양여금사업 78억원, 국고반환금 80억원
- 인건비, 전출금, 징수교부금 등 법정·의무적경비 463억원
- 수용비, 여비 등 필수 수요경비 73억원
- 도정시책추진사업비 등에 188억원을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은

의료급여기금운영 등 5개의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4,744억 2천 6백만원보다 96억 2천 3백만원이 증액(2.0%)된 4,840억 4천 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 의료급여기금은 국고보조금 1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원, 도, 시군부담전입금 3억원을 전액 의료급여진료비로 편성하고
- 치수사업은 순세계잉여금 71억원을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과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며
- 경도대학은 도비 15억원을 전입받아 수업료수입 6억원을 감액한 반면 대운동장조성 4억원, 본관증축 마무리공사에 5억원을 증액하고
- 지역개발기금은 결산이익배당금 4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 광역교통시설은 전년도 부담수입 3천 8백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여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음

## 2. 상임위원회 주요 검토사항

### 기획위원회

-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중앙지원 및 지방분권업무, 정보화 사업추진 등 당면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해 편성
- 도정정보화 촉진을 위한 지방행정정보화사업 12억 9백만원은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나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매년 이월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
- 도정시책홍보업무추진비 2천만원은 도정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증액, 도의회의 활동상황 홍보에도 적극 관심

### 자치행정위원회

-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 141억원의 101.2%인 143억여원 증액한 것에 대하여는 추후 정확한 결산액 추정 요망
- 자원봉사 의미지화사업 학술용역(15백만원) 시행시 전국화·통일화 주문
-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등 국비보조사업들이 시행도중 과도하게 증감 내시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
- 도·시군비 사업으로 태평양·오끼나와전 피징발자 한의비 건립(9천만원), 영해 3.18만세운동기념 조형물건립(7천5백만원)등은 국가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 교육환경위원회

-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사업은 추진사항 미비로 지난해 25억원 전액 명시이월한 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함
- 생활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이 당초 3개소(영천,안동,문경)에서 2개소(영천,문경)로 축소된 배경과 이유
- 송이환경개선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사용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와 사업계획의 면밀한 분석

## 농수산위원회

-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대폭 늘어난 것은 다행한 일이나 일부 사업에서 국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지적
- 대형방제장비구입지원사업, 용수개발 및 저수지건설사업,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강축방역약품구입비,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은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업임에도 감액되었는데 신중히 검토 필요
- 농업인대상 각종 교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이나 조정·변경 검토
- 이번 추경예산은 도전체 12.6% 증가한 반면, 농수산국 소관의 경우 8.7% 증액에 그친 것은 도정방향과 불일치
- 농업기술원이 타 연구기관에 비해 방대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험연구 및 지도사업에 대한 예산이 미미한 실정이므로 대책마련

## 산업관광위원회

- 공항운항 항공업계에 재정지원(4억 5천만원)하는 것은 항공 관리 업무가 국가사무임을 감안할 때, 문제점이 있으며 향후 울진공항 개항, 경부고속전철 개통 등 지역여건 변화를 예상하고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임
- 국학진흥원 운영비로 9천여만을 증액한 바, 이는 매년 道 재정 부담 가중과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운영주체를 국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
- 문화재보수시 많은 예산(149억원 증액)이 소요되는 만큼, 적기 유지·보수 및 관리에 철저
-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상징조형물건립 사업은 총 6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만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 지향적인 상징물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건설소방위원회

-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수해상습지개선사업 20억 9백만원 (8.7%)삭감은 재해취약시설의 체계적 정비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대응체제 확립
- 치수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71억 1천여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한 것은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다고 판단

### 3. 종합 심사의견

- ◆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경상적경비와 법정필수경비 부족분 및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사업비를 확보하고
- ◆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 지원금이 변경되거나 추가 내시되는데 따른 도비 부담분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으며
- ◆ 특히, 태풍 ‘루사’피해복구비 부족액 350억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중앙지원금 추가확보와 전년도 결산 잉여금 및 자체 세입재원 등을 바탕으로 소규모로 편성하였다고 사료됨

#### [세입부문]

- 최근 국내경기는 연초부터 이어진 국제정세의 불안과 ‘사스’ ‘물류대란’ 등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한 8%대에 못 미치는 3~4%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 이에 따른 금년도 우리도의 세수여건은 전년도 대비 3%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포항, 구미등 아파트 준공분 80억원을 비롯한 특수요인 등을 감안하여 300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세로 볼 때 연말까지는 금년도 세수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생각됨

- 그러나 아파트 가격상승 등 부동산 경기의 상승세 및 특소세 인하 등 기본여건이 다소 좋아진 것으로 보여지나 여전히 지역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실질적인 세수여건이 크게 개선될 조짐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체납세 징수와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또한 이자수입 42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유는 지난해 태풍 피해 복구비로 8,300억원이 교부되어 5월말 현재 99억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연말까지는 목표액보다 42억원이 늘어난 160억원 정도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너무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급급한 나머지 적기에 지급되어야 할 공사비, 물품·용역대금 등을 보류하는 것은 없는지 미리 챙겨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141억원)보다 100%이상 증액(143억원)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이 11월 이전에 이루어지고 연도폐쇄기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임을 감안하면 결산액 추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는 되지만, 연례적으로 1회추경 예산에 전년도의 많은 잉여재원을 계상하는 사례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에도 영향을 미치며 6개월이상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

## [세출부문]

- 국고보조금 1,763억원, 양여금 181억원, 증액교부금 61억원 등 2,005억원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10월 당초예산 편성시 중앙계획이 미확정 되었거나 그동안의 계획변경에 따른 추가내시 또는 증액교부된 것이며, 특히 국고보조금을 많이 따온 것은 해당 부서별 관계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만,
- 중앙계획이 빨리 확정·시달되어 도로, 교통, 치수, 태풍피해 복구사업 등 현안사업이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며 추경예산안을 앞당겨 편성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
- 그리고 경상경비중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도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수경비로서 가급적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하고, 추경예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편성이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 민간·사회단체 및 임의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는 대부분 운영비와 각종 기념·문화·체육행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기관·단체마다 매년 예산요구가 늘어나 점차 도 예산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실적을 기준으로 철저한 평가를 거쳐 유사단체의 통·폐합 및 인센티브식 지원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사료됨

-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국비보조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인 복지 시설 기능보강, 노인전문요양병원 건축, 지방행정정보화 사업, 용역비, 조형물 건립비, 문화재 보수, 항공업계 재정 지원, 엑스포조형물 건립 등은 가능한 한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추진함이 타당한 바,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과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서 시행해야 할 것임
- 그리고 인건비를 비롯하여 하계저탄자금융자, 소규모공원화 사업, 문화관광권 기반정비, 지역특화사업비 등 전액 삭감하거나 삭감율이 높은 경비는 사전에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근거와 소요추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가능한 한 당초예산에 편성, 도민과 직결되는 숙원사업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겠음.

VII.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I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IX.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별첨 수정조서 참고

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003년도 경상북도 제1회추경 수정조서

## [삭감조서]

(단위 : 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부기)	감 액	비 고
	계 건		1,189,860	
91	자치행정국	새마을지도자대학운영비지원	10,000	
96	"	관사관련조사용역수수료	10,000	
185	보건환경산림국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전산화 단층촬영장비구입	200,000	
201	"	중국하남성사방조림시범단지조성 설계조사대행	50,000	
254	농수산국	한방바이오산업육성교육센터지원	20,000	
338	경제통상실	공항버스은행결손지원	25,000	
359	"	예천공항운항항공업계재정지원	450,000	
404	종합건설북부지소	인건비	125,690	
405	"	일반운영비	32,080	
"	"	국내여비	3,000	
"	"	기타업무추진비	11,095	
406	"	정액급식비 등 5건	42,995	
365	문화체육관광국	2003경북리그개최	10,000	
366	"	코리아경주국제여자태권도오픈대회	200,000	

## [증액조서]

(단위 : 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부기)	증 액	비 고
243	농 수 산 국	한·칠레농업실태비교시찰	20,000	
	예산담당관실	예비비	1,169,860	

## [과목변경]

(단위:천원)

쪽수	소관부서	사 업 내 용	금 액	비고
186	보건환경산림국	한방산업펠트화사업기본구상용역 (목변경 : 207-01 → 308-05)	200,000	

○ 결 산 안 : 1건

- 2002회계연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 2002회계연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2회계연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보고서

## I. 심사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03년 6월 20일,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3년 6월 20일

다. 상정일자 : 제18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 7. 7)

## II.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Ⅲ.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 1. 세입·세출 결산현황

##### 가. 총괄

- 200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 규모는 3조 5,501억 9천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조 7,099억 9천 2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조 2,149억 2천 7백만원임.
-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4,950억 6천 5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1,834억 4천 5백만원, 사고이월액은 346억 9천 7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은 66억 8천 2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79억 5천 5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622억 8천 6백만원임.
-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3조 776억 1천 4백만원이었으나, 세입결산액은 3조 722억 8천 2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8,191억 4천 6백만원이며 잉여금은 2,531억 3천 6백만원임.
-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725억 7천 6백만원이었으나, 세입결산액은 6,377억 1천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957억 8천 1백만원이며 잉여금은 2,419억 2천 9백만원임.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예산현액	3,550,190	100%	3,077,614	100%	472,576	100%	
세입결산액(A)	3,709,992	104.5	3,072,282	99.8	637,710	134.9	
세출결산액(B)	3,214,927	90.6	2,819,146	91.6	395,781	83.7	
잉여금(A-B)	495,065	13.9	253,136	8.2	241,929	51.2	
잉여금내역	명시이월	183,445	-	177,635	-	5,810	-
	사고이월	34,697	-	32,497	-	2,200	-
	계속비이월	6,682	-	6,682	-	-	-
	보조금사용잔액	7,955	-	7,955	-	-	-
	순세계잉여금	262,286	-	28,367	-	233,919	-

## 나. 세입결산 현황

### 1) 총괄

- 2002년도 세입결산액은 3조 7,099억 9천 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3조 5,501억 9천만원보다 1,598억 2백만원(5%)이 증가하였음.
- 그 내역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3조 722억 8천 2백만원,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액 6,377억 1천만원임.
- 2002년도 미수납액은 539억 5천 9백만원으로 21억 1천 2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518억 4천 7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수납율(%) C/B
					결손 처분	익년도 이월	
합계	3,550,190	3,763,951	3,709,992	53,959	2,112	51,847	98.6
일반회계	3,077,614	3,125,564	3,072,282	53,282	2,111	51,172	98.3
특별회계	472,576	638,387	637,710	677	1	675	99.9
공기업특별회계	253,300	412,907	412,907	-	-	-	100
기타특별회계	219,276	225,480	224,803	677	1	675	99.7

※ 예산현액(3,550,190) = 예산액(3,455,067) + 전년도이월액(95,123)

## 2)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조 722억 8천 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3조 776억 1천 4백만원보다 53억 3천 2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 그 내역은 지방세 5,551억 9천 8백만원, 세외수입 2,150억 6천 4백만원, 지방교부세 4,087억 6천 7백만원, 지방양여금 1,698억 1천만원, 보조금 1조 7,234억 4천 3백만원임.
-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532억 8천 2백만원으로 21억 1천 1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511억 7천 1백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 -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결손 처분	익년도 이월	C/A	C/B
합 계	3,077,614	3,125,564	3,072,282	53,282	2,111	51,171	100	98
지 방 세	530,000	607,576	555,198	52,378	2,107	50,271	105	91
세 외 수 입	207,426	215,968	215,064	904	4	900	104	100
지방교부세	396,184	408,767	408,767	-	-	-	102	100
지방양여금	187,892	169,810	169,810	-	-	-	90	100
보 조 금	1,721,112	1,723,443	1,723,443	-	-	-	100	100
지 방 채	35,000	-	-	-	-	-	-	-

※ 예산현액(3,077,614) = 예산액(2,985,540) + 전년도이월액(92,074)

### 3) 특별회계

- 특별회계 결산액은 6,377억 1천만원으로 예산현액 4,725억 7천 6백만원보다 1,651억 3천 4백만원(34.9%)이 증가되었음.
- 내역별로 보면 지역개발기금 4,129억 7백만원, 의료급여기금 1,874억 4천 6백만원, 치수사업 306억 4천 1백만원, 경도대학 운영특별회계가 67억 1천 6백만원임.
-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6억 7천 7백만원으로 1백만원은 결손 처분하고 나머지 6억 7천 6백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음.

#### - 특별회계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결손 처분	익년도 이월	C/A	C/B
합 계	472,576	638,387	637,710	677	1	676	135	100
지역개발기금	253,300	412,907	412,907	-	-	-	163	100
의료급여기금	187,414	187,456	187,446	10	-	10	100	100
치 수 사 업	24,887	31,308	30,641	667	1	666	123	98
경 도 대 학	6,975	6,716	6,716	-	-	-	96	100

※ 예산현액(472,576) = 예산액(469,527) + 전년도이월액(3,049)

## 다. 세출결산 현황

### 1) 총괄

-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출결산액은 3조 2,149억 2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3조 5,501억 9천만원 대비 90.6%가 지출되었음.
- 그 내역은 일반회계가 2조 8,191억 4천 6백만원, 특별회계는 3,957억 8천 1백만원이며, 집행잔액 3,352억 6천 3백만원중 다음년도로 2,248억 2천 4백만원을 이월조치하고, 나머지 1,104억 3천 9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잔액)	지출율 (B/A)%
합계	3,455,067	3,550,190	3,214,927	224,824	110,439	90.6
일반회계	2,985,540	3,077,614	2,819,146	216,814	41,654	91.6
특별회계	469,527	472,576	395,781	8,010	68,785	83.7

## 2) 일반회계

-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2조 8,191억 4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3조 776억 1천 4백만원 대비 91.6%를 집행하였음.
- 결산액 내역은 일반행정비 4,421억 6천 8백만원, 사회개발비 7,780억 8천 2백만원, 경제개발비 1조 3,214억 3천만원, 민방위비 852억 8천 7백만원, 지원및기타경비 1,921억 7천 9백만원임.
- 집행잔액 2,584억 6천 8백만원중 2,168억 1천 4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조치하였고, 나머지 416억 5천 4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년도 이월액 (D)	불용액 (E)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합 계	2,985,540	3,077,614	2,819,146	216,814	41,654	91.6	7.0	1.4
일반행정비	448,063	454,010	442,168	9,756	2,086	97.4	2.1	0.5
사회개발비	788,916	804,913	778,082	17,875	8,956	96.7	2.2	1.1
경제개발비	1,452,209	1,524,925	1,321,430	186,136	17,359	86.7	12.2	1.1
민 방 위 비	86,845	89,299	85,287	3,047	965	95.5	3.4	1.1
지원및기타경비	209,507	204,467	192,179	-	12,288	94.0	-	6.0

### 3) 특별회계

- 2002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725억 7천 6백만원 대비 83.7%인 3,957억  
8천 1백만원으로,
- 그 내역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864억 5천 6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871억 1천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180억 2천 3백만원,  
경도대학운영특별회계 41억 9천 2백만원임.
- 집행잔액 767억 9천 5백만원중 80억 1천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고, 나머지 687억 8천 5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 특별회계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년도 이월액 (D)	불용액 (E)	예산현액대비(%)		
						지출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합 계	469,527	472,576	395,781	8,010	68,785	83.7	1.7	14.6
지역개발기금	253,300	253,300	186,456	-	66,844	73.6	-	26.4
의료급여기금	187,414	187,414	187,110	-	304	99.8	-	0.2
치 수 사 업	21,918	24,887	18,023	5,503	1,361	72.4	22.1	5.5
경도대학운영	6,895	6,975	4,192	2,507	276	60.1	35.9	4.0

#### 4) 세출예산 불용액 사유

- 세출예산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 405억 7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5억 4천만원, 예산절감 11억 2천 6백만원, 예산 및 보조금집행잔액 190억 5천 2백만원 예비비 462억 1천 4백만원 등임.

#### - 세출예산 불용액 사유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유 별	계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소계	지역 개발	의료 급여	치수 사업	경도 대학
계	110,439	41,654	68,785	66,844	304	1,360	277
· 계획변경 취소	40,507	10,077	30,430	30,430	-	-	-
· 집행사유 미발생	3,540	264	3,276	3,002	274	-	-
· 예산절감	1,126	1,018	108	-	-	10	98
· 예산집행잔액	5,188	4,736	452	6	30	337	79
· 보조금집행잔액	13,864	13,423	441	-	-	441	-
· 예비비	46,214	12,136	34,078	33,406	-	572	100

#### 라. 예산이용 · 전용 · 이체사용 현황

- (1) 예산이용 · 전용사용 : 해당사항 없음
- (2) 예산이체 사용 : 해당사항 없음

## 마. 예비비 결산현황

-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71억 7천 6백만원중 50억 4천 만원을 지출결정하고, 나머지 121억 3천 6백만원은 예비비 집행잔액임

### - 예비비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사업명	집행금액	집행사유	성과,사업소
계	4,018,158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구상금지급	106,980	울릉천부리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종합건설사업소
태풍 “라마순”피해 복구비 도비부담금	702,723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비	농산,해양수산,농업기반,산림,주택지적,도로,새마을,치수과,종합건설사업소
4-5월중 농작물서리 우박피해농가 농약대지원	80,849	호우피해 복구비	농산과
태풍 “루사”피해 복구에 따른 지원	1,270,351	태풍 “루사”에 따른 피해복구비	치수과,유통특작과,해양수산,보건위생,수질보전,주택지적,종합건설사업소
9.29우박피해농가에 따른 지원사업	59,314	우박피해에 따른 콤바인, 사과수매자금 지원	농산,유통특작과
8월집중호우 및태풍 “루사”피해 주택복구	1,063,282	8월 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주택지적과
태풍“루사” 피해주민 임시주거시설 동절기 보온시설 설치지원	29,996	태풍 “루사” 피해주민 임시주거시설 설치	주택지적과
9-10월중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한 농약대지원	20,179	9-10월중 농작물 우박피해 농가지원	농산과
봉급조정수당 지급	345,000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세정회계,보건환경,잠사곤충,영주소방서
태풍“루사”피해 양묘 복구지원	59,025	태풍 “루사”피해 묘목복구지원	산림과
교통사고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지급	239,397	교통사고손해 배상금지급	도로과
근무중에 입은 상해에 대한 배상금지급	41,062	근무중 입은 상해에 대한 배상금지급	농업기술원

## 바. 채무부담 결산현황

- 2002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도와 시·군 지방도정비사업에 100억원임.

### - 채무부담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채무부담 행 위 액	상환조건	채무부담행위사유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10,000			10,000
지방도 정비사업 (도 시행분)	2,479	2002년 일시상환	도비부담 채원부족	2,479
지방도 정비사업 (시.군 시행분)	319	"	"	319
지방도 정비사업 (종합건설사업소)	4,912	"	"	4,912
지방도 정비사업 (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	2,290	"	"	2,290

## 사. 이월비 결산현황

### 1) 총 괄

- 지방재정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81건에 총 2,248억원으로 명시이월 48건 1,856억원, 사고이월 31건 357억원, 계속비이월 2건에 67억원임.

- 세출예산의 이월비 현황 -

구분	건수	이월액(억원)	내용(억원)
총계	81건	2,248	
일반회계	76건	2,168	
명시이월	44	1,7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풍피해복구비 491</li> <li>• 국가지원지방도사업 384</li> <li>• 지방양여금사업 188</li> <li>• 백안~와촌간 도로확포장공사 40</li> <li>• 감척어선 보상금 37</li> <li>• 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증축 등 636</li> </ul>
사고이월	30	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원지방도사업 66</li> <li>• 지방양여금사업 65</li> <li>• 수해상습지개선사업 45</li> <li>• 농어촌생활용수개발 43</li> <li>•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106</li> </ul>
계속비이월	2	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부지역합동청사건립 39</li> <li>• 산림과학박물관건립 28</li> </ul>
특별회계	5건	80	
명시이월	4	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22</li> <li>• 경도대학 종합문화관 건립 1</li> </ul>
사고이월	1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해상습지개선사업 7</li> </ul>

2) 일반회계

- 일반회계 다음년도 이월액은 76건 2,168억원으로
  - 명시이월은 태풍피해복구비 등 44건에 1,776억원이고,
  - 사고이월은 국가지원지방도사업 등 30건에 325억원이며,
  - 계속비이월은 북부지역합동청사건립 등 2건으로 67억원임.

※ 일반회계 이월사업 조서 : 보조자료 참고

### 3) 특별회계

- 특별회계 다음년도 이월액은 5건에 80억원으로
- 그 내역을 보면
  - 명시이월은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등 33억원, 경도대학 종합문화관 건립 25억원 등이고
  - 사고이월은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22억여원임

※ 특별회계 이월사업 조서 : 보조자료 참고

## 2. 세입세출외 결산현황

### 가. 기금 결산현황

- 2002년도말 현재 경상북도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2,116억 6천 8백만원보다 17억 2천 3백만원이 줄어든 2,099억 4천 5백만원임.

#### - 적립기금 총괄 -

(단위 : 백만원)

종 류	전년도 (2001)	금년도 (2002)	증 가 액
• 중소기업 육성기금등 18종	211,668	209,945	△ 1,723

- 적립기금 결산 내역 -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 (2001)	금년도 (2002)	증 감	비 고
계 : 18종	211,668	209,945	△ 1,723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1,510	1,762	252	총 무 과
문화예술진흥기금	4,344	4,386	42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기금	12,011	12,699	688	체육청소년과
청소년육성기금	3,560	3,292	△ 268	"
농어촌진흥기금	46,157	45,038	△1,119	농 정 과
중소기업 육성 기금	98,920	94,313	△4,607	기업노동과
중소기업근로자 자녀장학 기금	1,966	2,553	587	"
식품진흥기금	14,141	13,928	△213	보건위생과
포플라장학 기금	220	217	△3	산 립 과
사회복지기금	5,211	5,274	63	사회복지과
재해구호기금	12,934	12,704	△ 230	"
장애인 복지 기금	962	1,381	419	"
노인복지 기금	2,454	2,465	11	가정복지과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1,527	1,519	△8	농업기술원
여성발전기금	1,059	1,618	559	여성정책과
재해대책기금	3,505	5,012	1,507	치수재난관리과
재난관리기금	1,187	1,784	597	"
지방채상환기금	0	0	0	예산담당관실

## 나. 채권 및 채무 결산현황

### 1) 채 권

- 2001년도 경상북도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 현재액은 5,019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416억원(8.3%)이 감소한 4,603억원임.
- 채권의 종류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 - 채권 현재액 내역 -

(단위:백만원)

종 류 별	전년도(2001)	금년도(2002)	증 감	비고
<b>계</b>	501,897	460,274	△ 41,623	
<b>일 반 회 계</b>	99,967	97,961	△ 2,006	
농어촌주택개량 용자	98,762	96,730	△ 2,032	
우수농고생지원 용자	203	200	△ 3	
서울사무소 임차	320	370	50	
시마네현 APT 임차	50	0	△ 50	
소방서 관사 임차	382	392	10	
관사임차	150	70	△ 80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소)	50	50	0	
일성콘도미니엄회원권	50	149	99	
<b>특 별 회 계</b>	401,930	362,313	△ 39,617	
지역개발기금	401,930	362,313	△ 39,617	

## 2) 채 무

- 2002년도말 현재 경상북도가 갚아야할 채무액은 6,347억여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6,707억원보다 360억원(5.4%)이 줄었음.
- 채무액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06억원, 특별회계는 4,341억원이며 채무 종류별로 보면 아래 표와 같음.

### - 채무 종류별 현황 -

(단위 : 억원)

종 류	전년도	금년도(2002)	증 감	비 고
계	6,707	6,347	△360	
일반회계	2,543	2,006	△537	
정부자금 차입	1,030	1,030	0	재경부
지역개발기금 차입	1,163	842	△321	도
청사정비기금 차입	39	34	△5	지방재정공제회
채무부담행위	311	100	△211	지방도정비사업
특별회계	4,164	4,341	177	
지역개발기금	4,164	4,341	177	

## 다. 공유재산 결산현황

### 1) 공유재산

- 200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085억여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939억원보다 146억원이 증가하였음.

#### - 공유재산 용도별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 증감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계	증	감	
합 계	493,853	14,646	16,466	1,820	508,499
행정재산	396,572	14,247	15,731	1,484	410,819
보존재산	31,330	0	0	0	31,330
잡종재산	65,951	399	735	336	66,350

#### -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 -

(단위 : 억원)

종류별	전년도(2001)		금년도(2002)		증 감		비고
	면적및수량	가 격	면적및수량	가 격	면적및수량	가 격	
계		4,939		5,085		146	
토 지	169백만 m <sup>2</sup>	4,245	170	4,381		136	
건 물	547동	532	562	542	15동	10	
임 목 축	546천 m <sup>2</sup>	95	546	95			
공 작 물		9		9			
선 박	2척	21	2	21			
항 공 기	1대	25	1	25			
유가증권	247,248주	12	247,248	12			

- ※ 증감내용 : 토지 136억 원  
 ─ 청사부지 및 도로 확·포장 편입(696필지) 138억  
 ─ 폐천부지 양여 및 하천개보수 편입(735필지) 15억  
 ─ 잡종지(폐천부지) 매각(65필지) △14억  
 ─ 기타 △ 3억
- 건물 10억 원  
 ─ 포항,영주,상주,문경소방파출소등 청사15동 신증축 7억  
 ─ 기타 3억

## 2) 물 품

- 2002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167종에 510억 8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80억 4천 6백만원보다 30억 3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단위 : 수량/개, 금액/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 증감						당해년도말 현재액	
			증		감		비교증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7,288	48,046	596	4,879	395	1,842	201	3,037	7,489	51,083
구 매			528	4,425	281	1,148	247	3,277		
관 리 전 환			68	454	114	694	△46	△240		
가 격 개 정 및 감 가 상 각			-	-	-	-	-	-		
기 타			-	-	-	-	-	-		

#### ※ 증가내역

- 업무용 : 4억원 증가(대형승용차 2대, 에어컨 112대 등)
- 사업용 : 27억원 증가(굴삭기 2대, 수질측정기 1대 등)

## 라. 금고결산 현황

### 1) 일반 및 특별회계

- 2002년도말 경상북도가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일반 및 특별회계 금고의 잔액은 2,656억 1천 3백만원으로서 공공예금이 68억 1천 3백만원이고 예치금이 2,588억원임

#### - 일반 및 특별회계 금고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2003년 이 입	잔 액		
				계	공공예금	예치금
합 계	3,297,084	3,028,471	3,000	265,613	6,813	258,800
일 반 회 계	3,072,281	2,819,146	3,000	250,135	35	250,100
특 별 회 계	224,803	209,325	0	15,478	6,778	8,700
의료보호기금운영	187,446	187,110	0	336	336	0
치 수 사 업	30,641	18,023	0	12,618	3,918	8,700
경 도 대 학	6,716	4,192	0	2,524	2,524	0

## 2) 세입세출외 현금

- 2002년도말 세입세출외 현금의 잔액은 3억 8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억 9천 2백만원보다 1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 세입세출외 현금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년 도			당해년도 말 잔액	비 고
		증가액	지출액	차감액		
합 계	292	19,650	19,634	16	308	
보 증 금	31	-	15	△15	16	
보 관 금	250	6,861	6,847	14	264	
기 타	11	12,789	12,772	17	28	

## IV.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 : 생략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V. 검토의견

### 1. 총괄부문

#### □ 결산규모

- 200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 규모는 3조 5,501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조 5,609억 2천만원 대비 38.6% 증가하였음.
  -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05%인 3조 7,099억 9천 2백만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91%인 3조 2,149억 2천 7백만원임.
- 결산잉여금 4,950억 6천 5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 명시이월 1,834억 4천 5백만원, 사고이월 346억 9천 7백만원, 계속비이월액 66억 8천 2백만원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9억 5천 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622억 8천 6백만원임.

## □ 재정운용 상황

- 경상북도의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추이를 보면 2001년까지 세입 결산액은 연평균 9.8% 증가했고, 세출 결산액은 6.5% 증가했으나 2002년도에는 세입·세출 각각 40.7%, 39.6%로 크게 증가했음

이와 같이 나타난 특징을 보면

-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자체수입은 조금씩 증가한 반면 국고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자립 여건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 이는 제도적·구조적으로 지방재정수입의 국가 의존도가 매년 높아지는 현상을 초래해 자립재정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하겠음.
-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방분권운동이 활발히 추진되어 국가재정(국세, 교부세 등)의 일부분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이양되어 지방재정을 확충시켜야 하겠으며,
- 아울러 조세 통·폐합 등 지방세체계의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세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는 법적·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일반회계 연도별 재정력 -

구 분	'99	2000	2001	2002
재정자립도	31.2%	29.2%	31.8%	25.1%
재정력지수	0.65	0.61	0.42	0.39
투자비비율	80%	82%	76%	81%

- 세입세출 연도별 결산추이 -

(단위:백만원)

구 분		'99	2000	2001	2002	전년대비 신장율(%)
세 입 액  (A)	합 계	2,038,176	2,163,877	2,636,265	3,709,992	40.7
	일반회계	1,720,310	1,761,024	2,126,443	3,072,282	44.5
	특별회계	317,866	402,853	509,822	637,710	25.1
	공 기 업	200,288	263,375	316,670	412,907	-
	기 타	117,578	139,478	193,152	224,803	-
세 출 액  (B)	합 계	1,857,056	1,954,290	2,302,355	3,214,927	39.6
	일반회계	1,590,774	1,641,836	1,972,765	2,819,146	42.9
	특별회계	266,282	312,454	329,590	395,781	20.1
	공 기 업	156,219	183,655	148,702	186,456	-
	기 타	110,063	128,799	180,888	209,325	-
수지(A-B)		181,120 (9.8%)	209,587 (9.7%)	333,910 (12.7%)	495,065 (13.3)	-

## 2. 세입부문

### □ 세입재원

-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44.5% 증가한 3조 722억 8천 2백만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조 3,020억 3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의 75%를 차지하여 전년 (69%)보다 6% 늘었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7,702억 5천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정도 줄었음.
- 지방세는 부과액 6,076억원 대비 9% 줄어든 5,552억원을 징수하고 524억원은 미수납 하였으며 이중 21억원은 결손 처분하고 나머지 사유는 징수유예 16억원, 채무자 거소불명 54억원, 무재산, 고질적체납 등이 226억원, 기타 소송계류 및 압류와 관련하여 207억원 등임.

### □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발생

- 그 동안 지속적인 징수노력으로 지방세 수납액은 늘고 체납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체납액이 503억여원중 재산이 없거나 행불, 부도·폐업 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320억여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임

- 그러나 채무자 거소불명, 무재산 및 고질채납자 등에 의한 체납액은 지속적인 재산추적 조사와 아울러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설정·운영에 대한 보완, 지방세체납액 목표관리제 운영의 내실화, 체납액 징수실적 우수시·군에 대한 인센티브의 확대적용 및 시상금 인상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 재정수요의 탄력적인 관리·운영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도민의 입장에서 충실한 경영관리 원칙을 지켜 나간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민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지방세 체납액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 연도별 체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액 (A)	징 수 액 (B)	미 수 납 액			체납율(%) (C/A)
			계(C)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99년	384,659	347,168	37,491	2,032	35,459	10.8
2000년	373,945	329,670	44,275	5,076	39,199	11.8
2001년	538,661	491,442	47,219	2,987	44,232	8.8
2002년	607,576	555,188	52,378	2,107	50,271	8.6

- 지방세 미수납 사유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사 유 별					
		징수유예	채 무 자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 및 재산 압 류 중	기 타
지방세 (일반회계)	44,232 (100%)	48 (0.1)	5,304 (12.0)	9,230 (20.9)	7,346 (16.6)	11,388 (25.7)	10,916 (24.7)

### 3. 세출부문

#### □ 세출예산 불용처리

- 결산결과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은 1,104억 3천 9백만원으로서 불용액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취소 405억 7백만원 (36.7%), 집행사유 미발생 35억 4천만원(3.2%), 예산절감 11억 2천 6백만원(1.0%), 예산집행잔액이 51억 8천 8백만원 (4.7%), 보조금 잔액 138억 6천 4백만원(12.6%), 예비비 잔액 462억 1천 4백만원(41.8%)임.
- 불용액은 다음년도 예산에 용이하게 쓰여지고 예산절감 효과는 있으나 계획변경취소 405억원, 집행사유미발생 35억원 등 440억원이 과다 발생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및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 타당성 등을 세밀히 분석·검토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를 당초에 차단하여 효율적이고도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현 예산제도하에서 예산의 편성·집행·평가과정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매년 반복되는 점증적인 예산편성, 집행에 대한 평가제도의 부재로 책임행정의 구현이 어려우며,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물론 예산집행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판단됨.

-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불용액	사 유 별					
			계 획 변경취소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예 산 집행잔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3,550,190	110,439 (100%)	40,507 (36.7)	3,540 (3.2)	1,126 (1.0)	5,188 (4.7)	13,864 (12.6)	46,214 (41.8)
일반회계	3,077,614	41,654	10,077	264	1,018	4,736	13,423	12,136
특별회계	472,576	68,785	30,430	3,276	108	452	12,136	34,078

□ 예산이월의 적정성

- 다음년도 이월액은 81건에 총 2,248억원으로서 명시이월 48건 1,834억원, 사고이월 31건 347억원, 계속비이월 2건에 67억원임.
-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지만, 예산운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비의 금액 또는
-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 또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 완성연도까지 순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 이월사업비가 예년에 비해 과다하게 늘어난 것은 사업계획 수립, 사업의 연내 완공, 사업기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세밀히 검토하여 적정성을 따져 볼 필요성이 제기됨.

□ 예비비 지출

- 예비비는 회계년도중 재해피해 응급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재난과 긴급한 사업추진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출하도록 되어 있음.
- 200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 교통사고 구상금 및 배상금 3억 4,638만원
  -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31억 2,538만원
  - 서리·우박피해농가 농약대 8,085만원
  - 우박피해농가 지원사업 5,931만원
  - 9~10월중 농작물피해농가 농약대 지원 2,018만원
  - 봉급조정수당 지급 3억 4,500만원
  - 근무중 입은 상해배상금으로 4,106만원을 지급하였으나
- 이중 봉급조정수당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02년 11월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침에 의해 확정되었기 때문임.

- 예비비 지출 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비 고
합 계	17,176	4,638	4,018	620	12,538	
일반회계	17,176	4,638	4,018	620	12,538	
특별회계	-	-	-	-	-	

VI.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II. 토론요지 및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VIII. 심사결과 : 원안가결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02회계연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보고서

## I. 심사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03년 6월 19일, 경상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3년 7월 5일

다. 상정일자 : 제18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 7. 7)

## II.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Ⅲ.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 1. 세입세출 결산현황

##### 가. 총괄

-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은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522억 8천 1백만원을 포함하여 1조 9,315억 1천 6백만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1조 9,287억 3천 5백만원으로서
    - 의존수입은 1조 6,546억 6천 4백만원으로서 85.8%
    - 자체수입이 2,740억 7천 1백만원으로 14.2%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결산액은 1조 7,465억 6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0.4% 지출되었음.

#### <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비고
1,931,516	1,928,735	1,746,506	182,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세계잉여금 : 29,948</li> <li>○ 이월금 : 152,281</li> <li>· 명사이월 - 47,398</li> <li>· 사고이월 - 104,883</li> </ul>

## 나. 세 입

- 세입 예산현액은 1조 9,315억 1천 6백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조 9,289억 3,800만원이고, 이중 1조 9,287억 3,500만원은 수납(99.9%)되었고, 4,900만원은 불납 결손 되었으며, 1억 5,400만원은 미수납 되었음.

### 불납 결손액 4천 9백만원은

- 대지료 등 재산수입 8백만원
- 입학금 및 수업료 3천만원
- 잡수입 1천 1백만원

### 세부내용을 보면

- 재산수입 결손은 법원 청산 과정에 잔액부족으로 발생 되었으며
-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학생의 자·퇴학에 의한 것이며
- 잡수입은 임차인 사망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 미수납액 1억 5천 4백만원은 |

- 대지료 등 재산수입 6천 7백만원
- 수업료 수입 1천만원
- 기타수입 등 7천 6백만원

### 세부내용을 보면

- 채무자 거소 불명 4백만원, 채무자 재력부족 7천 8백만원  
재산 압류 중 1천 7백만원, 기타 5천 5백만원이 미수납 된 것으로 판단됨

< 세입 결산 내역 >

(단위:백만원)

구분	관 별	예산현액	징결정액	수납액	불납손	미수납액	수납율 (%)
	계	1,931,516	1,928,938	1,928,735	49	154	99.9
의 존 수 입	소 계	1,658,004	1,654,664	1,654,664			100.0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1,271,170	1,276,099	1,276,099			100.0
	지방교육 양여금	215,220	206,954	206,954			100.0
	국고지원금	9,846	9,846	9,846			100.0
	법정전입금	156,293	156,293	156,293			100.0
	비법정 전입금	1,939	1,939	1,939			100.0
	주민(기관등) 부담금	1,291	1,288	1,288			100.0
	기타 지원금	2,245	2,245	2,245			100.0
자 체 수 입	소 계	273,512	274,274	274,071	49	154	99.9
	재산수입	8,305	8,866	8,790	8	68	99.1
	입학금및 수업료	36,291	36,154	36,114	30	10	99.9
	사용료및 수수료	158	160	160			100.0
	잡수입	17,567	17,903	17,816	11	76	99.5
	이월금	211,191	211,191	211,191			100.0

□ 세입결산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의존 수입은 1조 6,546억 6천 4백만원이며 세입 결산액 대비 85.8%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2,760억 9천 9백만원
○ 지방교육양여금	2,069억 5천 4백만원
○ 국고지원금	98억 4천 6백만원
○ 법정전입금	1,562억 9천 3백만원
○ 비법정전입금	19억 3천 9백만원
○ 주민부담수입 등	35억 3천 3백만원

자체수입은 2,740억 7천 1백만원이며 세입 결산액 대비 14.2%임

○ 재산수입	87억 9천만원
○ 입학금 및 수업료	361억 1천 4백만원
○ 사용료 및 수수료	1억 6천만원
○ 잡수입	178억 1천 6백만원
○ 이월금	2,111억 9천 1백만원

< 세입예산 재원별 내역 >

(단위:백만원)

의 존 수 입					
소 계	지방교육재정 교 부 금	지방교육 양 여 금	국고지원금	전입금	주민부담수입
1,564,664	1,276,099	206,954	9,846	158,232	3,533

(단위:백만원)

자 체 수 입					
소 계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 업 료	사용료 및 수 수 료	잡수입	이월금
274,274	8,866	36,154	160	17,903	211,191

## 다. 세 출

□ 예산현액은 1조 9,315억 1천 6백만원으로서  
예산액 1조 7,955억 4천 1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359억 7천 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 이중 1조 7,465억 7백만원은 지출(90.4%)하였고,
- 1,522억 8천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7.9%)하였으며
- 327억 2천 9백만원은 불용(1.7)처리 하였음

### <불용액 성질별>

○인 건 비	56억 8천 5백만원
○물 건 비	27억 1천 4백만원
○경 상 이 전	89억 4천 3백만원
○자 본 지출경비	75억 8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77억 9천 7백만원
○내부거래	9백만원

### <불용액 발생 원인별>

○계획변경 및 취소	28억 4천 4백만원
○정원 및 호봉미달	2백만원
○예 산 절 감	9억 2천 7백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136억 3천만원
○집 행 잔 액	153억 2천 4백만원

## < 세출 결산 내역 >

(단위:백만원)

관 별	예산액	예 산 결 정 후 증 감 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불용율 (%)
합 계	1,795,541	135,975	1,931,516	1,746,507	152,280	32,729	1.69
유 치 원	9,393	81	9,475	7,946	1,465	63	0.66
초등학교	236,442	28,286	264,728	198,554	61,292	4,882	1.84
중 학 교	213,151	40,584	253,735	218,856	33,239	1,640	0.64
고등학교	268,975	57,983	326,959	273,086	50,573	3,300	1.0
특수학교	16,103	49	16,152	15,230	676	247	1.52
평생교육	5,383		5,383	5,201	30	152	2.82
급여관리	863,179	7,969	871,147	864,294		6,853	0.78
복지후생	100,849		100,849	96,328		4,521	4.48
교육위원회	494		494	478		16	3.23
선거관리	262		262	253		9	3.43
교육청	16,285	890	17,174	16,163	55	956	5.56
지역교육청	14,373	5,099	19,472	14,350	4,667	455	2.33
교육지원기관	9,350	5,137	14,487	13,849	283	355	2.45
지방채상환	23,402		23,402	21,919		1,483	6.33
예 비 비	17,900	△10,103	7,797			7,797	100

< 불용액 내역 >

(단위:백만원)

성질별	예산액	불용액	원 인 별 내 역						불용율	
			계 변 취	획 경 및 소	정 원 및 호 봉 미 달 영	예 산 결 감	지 사 미 발 생	집 행 잔 액		기 타
계	1,931,516	32,728	2,844		2	927	13,630	15,324		1.69
인 건 비	680,934	5,685			2		513	5,170		0.83
물 건 비	228,043	2,714	205			488	54	1,966		1.19
경상이전	609,995	8,943	233				4,988	3,722		1.47
자본지출 경비	392,027	7,580	2,406			439	278	4,457		1.93
예비비 및 기타	7,797	7,797					7,797			100
보전지출	12,458									
내부거래	262	9						9		3.55

라. 예 비 비

- 당초 예산액 179억원에서 101억 3백만원은 지출(56.4%)하여 현재 77억 9천 7백만원이며
- 본청 및 경주 등 8개 교육청의 태풍 피해시설복구비로 11억 9천 1백만원, 본청 및 포항 등 21개 교육청의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으로 87억 2백만원이 지출되었음.

예 비 비 지출 현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지출 결정액	지출액	잔 액	사 유
계	10,103	9,893	210	
태풍피해시설복구	1,400	1,191	209	제 15호태풍“루사”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8,703	8,702	1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 마. 예산 전용

당해연도 전용액은 10억 1천만원으로서

- 교실 증축(용암초등 등 6개교) 9억 2천만원
- 교육정보시스템 입력 9천만원임.

### 예산 전용 내역

(단위:실,천원)

기관명	사업명	전용액		전용일자	비고
		증	감		
계		1,010,401	1,010,401		
포항교육청	교실증축사업 계획 취소 및 축소		920,401	2002.8.21	취소:포항지곡초(6) 축소:포항계철중(3),포항향도중(2)
경주교육청	교실증축	700,501		"	용암초(3),경주초(3),월성중(2)
상주교육청	교실증축	219,900		"	남산중(3)
교육정보화과	교육정보시스템 입력 용역비		90,000	2002.9.12	
교육정보화과	교육정보시스템 입력 관서운영비	90,000		"	

바. 계속비 : 해당없음

## 사. 이 월 비

이월액은 예산현액 1조 9,315억 1천 6백만원 중 1,522억 8천만원  
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7.9%임

- 명시이월 91건, 473억 9천 8백만원
- 사고이월 91건, 1,048억 8천 2백만원

### 이 월 액 현 황

(단위:백만원)

예산현액	이 월 액				비 율 (%)
	계	계 속 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1,931,516	152,280		47,398	104,882	7.88

### 이를 검토하여 보면

-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명시 또는 사고이월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이월비 발생 현황을 보면 당해 연도는 전년도에 비해 12%가 증가 되었는데, 이는 사업의 시급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검토보다는 사업비 확보나 사업 추진 의욕만 앞서서 당면 현안사업이 후순위로 미루어질 우려가 많으므로 앞으로는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겠음.

### <최근 3년간 이월비 발생 현황>

(단위:백만원)

회계년도	예산현액	이 월 비			이월률 (%)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2000	1,588,854	83,087	37,636	45,451	5.23
2001	1,782,704	135,974	71,058	64,916	7.63
2002	1,931,516	152,280	47,398	104,882	7.88

## 2. 세입세출 외 결산 현황

### 가.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1) 채 권

- 전년도말 채권액 977억 5천 3백만원보다 197억 6천 6백만원이 감소된 779억 8천 7백만원으로서
- 전교조경북지부사무실 전세권 5천만원과 재산 임대료 3천 9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 국고대여장학금 197억 8천 8백만원, 원어민 영어교사 주택 전세권 등에서는 3천 7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채 권 결 산 현 황

(단위:백만원)

종 류 별	전년도말	연도중 증감액		당 해 연도말	증 · 감
		증	감		
계	97,753	990	20,756	77,987	△19,766
원어민영어교사 주택 전세권	116		35	81	△35
전교조경북지부 사무실 전세권	50	20		70	20
국고대여장학금	97,471	893	20,681	77,683	△19,788
재산 임대료	104	67	28	143	39
수 업 료	11	10	11	10	△1
지 체 상 금	1		1		△1

## 2) 채 무

- 전년도말 채무액 1,750억 400만원보다 124억 5천 8백만원이 감소된 1,625억 4천 6백만원으로서 차입금 내역은
  - 교원명예퇴직수당 1,181억 2천 2백만원
  - 학교시설비 122억 7천 4백만원
  - 소규모학교통폐합지원비 321억 5천만원임.

### 채 무 결 산 현 황

(단위:백만원)

종류별	전년도말	당해연도중 증감액			당 해 연 도 말	기한도래 미지급 이 자	비 고
		계	채무발생액	상환·소멸액			
차입금	175,004	△12,458		△12,458	162,546		교원예퇴직수당 상환

## 나. 재 산

### 1) 공유 재산

-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보다 1,346억 1천 3백만원이 증가된 2조 6,877억 6천 4백만원임.
- 행정재산은 전년도말 보다 1,336억 2천 9백만원이 증가된 2조 6,307억 6백만원이며
- 잡종재산은 전년도말 보다 9억 8천 4백만원이 증가된 570억 5천 8백만원임.

### 공 유 재 산 현 황

(단위:백만원)

용 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중 증 · 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증	감	
계	2,553,151	134,613	153,669	19,056	2,687,764
행정재산	2,497,077	133,629	143,649	10,020	2,630,706
잡종재산	56,074	984	10,020	9,036	57,058

## 2) 물 품

물품은 전년도말 보다 106억 3천 4백만원이 증가된  
1,450억 5천 2백만원으로서

전기·기계 등 10종, 4,202점 구입에 따른 물품 현재액임.

### 물 품 현 황

(단위:수량/점, 백만원)

품 종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현 재 액	
			증		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전기기계 등10종	26,280	134,418	4,202	20,912	1,777	10,278	28,705	145,052

## IV.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 : 생략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V. 검토의견

### 1. 총괄 부문

200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359억 7천 4백만원 포함하여  
1조 9,315억 1천 6백만원임

- 세입결산은 1조 9,289억 3천 8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9,287억 3천 5백만원을 수납(99.9%)하였으며,  
불납결손액 4천 9백만원,  
미수납액은 1억 5천 4백만원임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90.4%인 1조 7,465억 7백만원이며
- 따라서 세입 및 세출결산액의 차액은 1,822억 2천 9백만원으로  
이월금 1,522억 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99억 4천 8백만원임

## 2. 세입부문

- 먼저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는 의존수입이 전체예산의 85.9%를 차지하고,  
-재산수입과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이월금  
등 자체수입은 14.1%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음
- 2003년도 이월사업비 1,522억 8천만원과 세계잉여금 299억  
4천 8백만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및 운용에 적정을 기하였  
다고 보기 어려우며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매년 반복되는 불납결손이나 미수납액 등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 불납 결손 및 미수납액 발생 현황

(단위:천원)

구분 년도별	불 납 결 손 액					미 수 납 액				
	계	무재산	거 소 명 불	시 호 성 완	기 타	계	거 소 명 불	재 력 족	재 산 류 중	기 타
2001년도	59,587	7,150	1,855	1,087	49,495	115,457	7,120	39,335	7,010	61,992
2002년도	49,024	3,529	2,476	3,024	39,995	153,229	3,465	77,745	16,832	55,187

### 3. 세출부문

#### □ 먼저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 예산현액 1조 9,315억 1천 6백만원의 90.4%를 지출하였고
- 미지출액은 1,850억 9백만원으로
  - 2003년도 이월액 1,522억 8천만원,
  - 불용액 327억 2천 9백만원(불용율 1.69%)이며 전체적으로 집행에 걱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됨

#### □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 2003년도 이월액은 1,522억 8천만원( 예산현액의 7.9%)
  - 명시이월 : 91건 473억 9천 8백만원(2.5%)
  - 사고이월 : 91건 1,048억 8천 3백만원(5.4%)임
- 이월액은 주로 시설사업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이월비 경우 예산현액 대비 2001년도 3.6%, 2002년도 5.4%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은 교육수혜자에게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함 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있으며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과 우선순위등 정확한 투자심사를 통하여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능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 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VI.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심사결과 : 원안가결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청 원 서 : 1건

- 문명중학교설립인가승인에관한청원

# 『문명중학교설립인가승인에관한청원』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3년 6월 4일

나. 제안자 : 경산시 백천동 산16번지 문명교육재단 이사장  
홍영기 외 66인

다. 회부일자 : 2003년 6월 10일

라. 상정일자

제18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환경위원회  
(2003년 7월 2일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2. 청원취지

- 당초 청도군 운문면에 소재한 문명중·고등학교는 1992년도에 운문댐 건설로 수몰하게 되어 1989년 9월 5일 경상북도교육위원회에서는 문명고등학교만 청도군 운문면에서 경산시 백천동으로 이전 승인하고, 중학교는 폐교당시 경산지역 학생수급요인이 있을 때 부활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였음.
- 최근 경산지역 인구증가로 학생수급요인은 많이 개선되었으며 경산지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인접한 관계로 지역 초등학교의 우수 학생들이 대구로 유출되어 지역 중등교육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
- 경산 시민들이 경산교육의 경쟁력을 키울 명문 중·고등학교 설립을 희망하고 있어, 이에 학교법인 문명교육재단에서는 국가적 사업인 운문댐 건설로 수몰된 문명중학교를 부활하여 지역 사립 명문중학교를 설립하고자함.

### 3. 그 동안 추진과정

- ① 2001. 1.13 : (가칭)문명중학교 설립계획 승인 신청
- ② 2001. 3. : 문명고등학교 병설 (가칭)문명중학교 설립인가 건의  
(경산회 회장 최희욱 외 경산회원 일동)
- ③ 2002. 9.16 : (가칭)문명중학교 설립인가 신청(경산교육청)
- ④ 2002.10.17 : 업무연락으로 보완 요청
- ⑤ 2002.11.26 : 경산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진달
- ⑥ 2003. 1.14 : (가칭)문명중학교 설립계획서 반려  
(사유: 백천택지개발지구 증가 학생 전원 수용규모가 필요하며 이에 해당하는 수익용재산 확보 계획서 보완)
- ⑦ 2003. 1.28 : 문명고등학교 병설 (가칭)문명중학교 설립계획 승인  
신청(경산교육청)
- ⑧ 2003. 3.18 : 경산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진달
- ⑨ 2003. 3.21 : 문명고등학교 병설 (가칭)문명중학교 설립계획 승인  
신청 반려(사유: 백천지구내 공립중학교 1개교 설립계획)
- ⑩ 2003. 4.18 : (가칭)문명중학교(부활) 설립인가 탄원서 제출  
(경산시 백천동 산 16번지 문명교육재단 이사장 홍영기)
- ⑪ 2003. 5. 5 : (가칭)문명중학교(부활)설립인가 진정서 제출  
(경산시 계양동 672-1 김길곤 외 461명)
- ⑫ 2003. 4.18 : (가칭)문명중학교(부활) 설립인가 탄원서 제출  
(경산시 백천동 산 16번지 문명교육재단 이사장 홍영기)
- ⑬ 2003. 6. 9 : (가칭)문명중학교 설립인가 승인에 관한 청원서  
제출(경산시 백천동 산 16번지 문명교육재단 이사장  
홍영기외 66인)

## 4. (가칭)문명중학교 설립 계획(안)

1. 설립주체 : 문명교육재단
2. 위 치 : 경산시 백천동 산 16번지 (문명고등학교 내 병설)
3. 규 모
  - 가. 학급수 : 완성 12학급 (학년당 4학급)
  - 나. 학생수 : 420명 수용계획
  - 다. 개 교 : 2005. 3. 1 개교예정
4. 교육용 시설확보 계획(권장 시설 제외)

### 가. 확보 현황

(단위:실,m<sup>2</sup>)

구 분	기 준	기확보 및 추가계획			과부족
		소 계	기확보	추 가	
실수(면적)	40.5(4,159)	35(3,763)	8(734)	27(3,029)	△5.5(396)

### 나. 추가분 확보 계획

- 실 수 : 27실(연면적 3,029m<sup>2</sup>)
  - 소 요 액 : 1,730백만원
  - 소요재원 : 수익용 기본재산 일부(8건)처분 충당
- ※ 부족시설 중 관리실, 식당 등은 고등학교와 공동 사용계획

## 5. (가칭)문명중학교 설립에 대한 경상북도교육청의 입장

### ○ 학생수용 계획은

- 2004년도부터는 중학교까지 전면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경산시 백천택지지구개발로 6천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향후 증가 예정 학생수(930여명) 및 경산지역의 학생 수용계획 등을 감안 하면 24~30 학급 정도의 단설 공립 중학교 1개교 신설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 공립 단설중학교 설립의 타당성은

- 백천 지구내에 14,500m<sup>2</sup> 규모의 (가칭)백천중학교 부지가 이미 구획되어 있으며
- 향후 학생수급 계획상 신설학교 학급 수는 24~30학급이 되어야 하며, 이 중 사립중학교에서 12학급을 수용하고 나머지 12~18 학급을 공립중학교에서 수용하게되면 2개교 모두 소규모 학교가 되어 교육재정 투자 측면과 교육과정 운영면에서 비효율적이며
- 또한 병설학교는 학생생활 지도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학부모들은 단설을 원하고 있는 추세임.

### ○ 학생수용시설의 문제점으로는

- 문명고등학교 병설로 (가칭)문명중학교가 운영될 경우 문명고등학교의 현재 시설은 제7차 교육과정 적용 학교 시설 설비기준 대비 현 시설 보유 현황은 중학교와 병설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여유가 없는 실정임.

※ 문명고등학교 시설 현황(15학급, 권장 시설 제외)

(기준면적)

5,481m<sup>2</sup>

(보유면적)

4,559m<sup>2</sup>

(부족면적)

922m<sup>2</sup>

##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영수)

1. 학교 설립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적합여부, 지역의 학생수급 상황, 주민여론, 지역교육발전 기여도, 학교 운영 제반여건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가. 이 중 지역 중학생 수급상황은

- 학교 신설의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최근 3년간(2000~2002년도) (가칭)문명중학교 학군내 (경산시 중앙동 등 8개) 중학교 진학 예비 대상자 (11~13세)와 대상자(14~16세) 현황을 경산시 발간 「2000~2002년도 주민등록 인구 통계」(별지1)와 2003년도 이후 경산지역 신규 건립 아파트 세대 현황(별지2)을 통해 살펴보면,

- (가칭)문명중학교 학군내 전체 인구는 2000년도 119천명에서 2002년도 말 126천명으로 7천여명(5.9%)이 늘어났으며 향후 인구 증가 요인인 신규 아파트 건립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8천여 세대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으며
- 중학교 진학 예비 대상자 및 대상자 연령별 변화 현황(별지1)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인 11세를 기준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다가 중학교 3학년인 16세에 증가하고 있어 경산지역은 전반적으로 중학생 수급상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나. 다음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으로서

- 탄원서, 청원서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뜻을 개진하였으나, 경북도 교육청에서는 직접 경산지역의 초등학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다. 지역교육발전 기여도 측면을 살펴보면,

- 중학교는 학군제이므로 명문 중학교 육성에 대한 주민의 인식은 낮은 반면 고등학교는 명문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의 명문교 육성이 지역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라. 학교운영 여건을 보면

- 문명교육재단에서 신청한 (가칭)문명중학교 설립 계획안을 검토해 보면 교육용 시설확보는 기준 실수 40.5실 중 겨우 8실만 확보하고 있으므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추가로 27실을 확보하더라도 5.5실이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추가 및 부족분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학교설립에 따른 예산측면을 살펴보면

- 2003년도 학교기본운영비 편성기준상 「중학교 학급 규모별 학교단위 표준교육비」는 다음 표와 같음.

(1~6)학급	(7~12)	(13~18)	(19~24)	(25~30)
99백만원	110	127	137	150

○ 따라서 경산 백천지구에 24~30 정도의 대규모 1개교 설립보다 사립 12학급, 공립 12~18학급 정도의 소규모 2개교를 설립하게 되면 학교기본운영비의 경우 86백만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지역교육 재정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사료됨.

2. 다음은 경북도교육청이 문명교육재단에 회시한 내용 중 중학교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3항에 의해 학교신설이 지양되어야 한다고 한데 대해서는

가. 2004년도 중학교 전면 의무교육 실시 의의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재삼 인식하여 모든 국민들이 무상으로 중학교 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특히 이를 통해서 국민의 기초 학력을 향상시키고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국가·자치단체·교육재단 등은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그 역할을 함께 해야 할 것이므로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와 사립학교 설립 지양을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됨.

3. 이상에서 제기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보면,

가. 경산지역 학생 수급상황의 증가로 향후 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으므로

나. 경북도교육청에서는 중학교 설립의 여건과 방침 등을 경산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주지시킨 후 공청회 등을 통해 학부모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중학교 설립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특이사항 없음

8.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9. 심사결과

“문명중학교 설립인가 승인에 관한 청원의 건”은 경상북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거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고 설립인가권자인 경상북도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하고 의견서 채택

※ 붙임 : 문명중학교 설립인가 승인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서

10. 소수의견의 요지 : 특이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문명중학교설립인가승인에관한청원의견』에 대한

## 의견서

2003년 6월 4일 경산시 백천동 산 16번지 문명교육재단 이사장  
홍영기 외 66인이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한 『문명중학교설립인가  
승인에 관한 청원의 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발의합니다.

청원인 등이 희망하는 문명중학교 설립인가 승인에 관한 청원의 견은  
그 청원의 취지와 내용이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지역은 24~30학급 규모의 중학교 설립이 필요하여  
증가 학생수용을 위해 백천지구내에 14,500m<sup>2</sup>규모의 공립중학교  
설립 부지가 이미 구획되어 있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백천지구내에 공·사립중학교를 별도로 설립할 경우, 교육재정  
투자측면과 교육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문명교육재단은 설립인가 승인을 받게 되면 청원의 내용대로  
순수 재단의 재원으로 문명 중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경산지역의 초등학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여론을 객관적으로 수렴한 후 문명중학교 설립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지1)

최근 3년간(2000년~2002년도) 경산시 중앙동 등 8개  
**중학교 진학 예비 대상자 및 대상자 연령별 현황**

연령별 연도별	학군내 인 구	예 비 대 상 자					대 상 자					
		11세	12세	증감율 (%)	13세	증감율 (%)	14세	증감율 (%)	15세	증감율 (%)	16세	증감율 (%)
2000	119,596	1,516	1,190	△21.5 (326감)	1,181	△0.8 (9감)	1,162	△1.6 (19감)	1,150	△1.0 (12감)	1,292	12.3 (142증)
2001	122,478	1,482	1,318	△11.1 (164감)	1,206	△8.5 (112감)	1,189	△1.4 (17감)	1,179	△0.8 (10감)	1,313	11.4 (134증)
	전년 대비 증감율 (%)	2.4 (2,882증)	△2.2 (34감)	10.8 (128증)	2.1 (25증)	2.3 (27증)	2.5 (29증)	1.6 (21증)				
2002	126,493	1,695	1,335	△21.2 (360감)	1,344	0.7 (9증)	1,206	△10.3 (138감)	1,214	0.7 (8증)	1,353	11.4 (139증)
	전년 대비 증감율 (%)	3.3 (4,015증)	14.4 (213증)	1.3 (17증)	11.4 (138증)	1.4 (17증)	2.9 (35증)	3.0 (40증)				

자료) 경산시 통계계 : 「2000~2002년도 주민등록인구 통계」 참조

※ 초·중등교육법

제2장 의무교육

제12조(의무교육)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의 확보 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안의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데

필요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안의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위탁하여 의무교육 대상자의 일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별지2)

## 경산시 지역 신규 건립 아파트 세대 현황

입주예정년도	위 치	세대수	비고
계		8,278	
2003년도	소 계	2,096	
	• 사동 670-1	758	
	• 사동 659-1	340	
	• 서부택지개발지구 1BL	688	
	• 조영동 572-2	310	
2004년도	소 계	2,994	
	• 대평택지개발지구	1,278	
	• 서부택지개발지구 2BL	516	
	• 서부택지개발지구 1BL	328	
	• 백천택지개발지구 1BL	872	
2005년도	소 계	2,660	
	• 서부택지개발지구 4BL	510	
	• 서부택지개발지구 5BL	968	
	• 백천동택지개발지구 4BL	630	
	• 정평동 151외 6필지	163	
	• 정평동 154외 3필지	93	
	• 백천동택지개발지구 3BL	296	
2006년도	소 계	528	
	• 상방동 143-6	528	

## **의정활동보고서(제180회 임시회)**

2003. 7 인쇄 / 2003. 7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39

FAX : 955-9185

<비매품>